

2025 『정책자금 상환연장』 대상 확대 안내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의 월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[정책자금 상환연장] 제도를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. 해당 제도에 대해 2025년 3월 6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안내합니다.

□ 지원대상

-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,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(이하 ‘거치기간’) 종료되어 원리금을 한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써,
 - * 거치기간 중이라면, 원리금 상환도래로 1회 상환 후 신청가능
 - 경영애로를 겪고 있으나(이하 4개 사유 중 1개 해당시 인정)
 -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다중 채무자
 - 매출액이 전기 대비 감소한 업체
 - 중·저신용(NCB 839점 이하) 업체
 - 공단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
 -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, 평가된 업체
 - (대상추가) 신청하려는 공단 운전자금대출 중 30일이하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업체*
 - * 공단 외 타기관 연체 발생시에는 종전과 같이 해소 후 지원 가능
 - ** (‘24.8.16.이전)기존 집중관리기업 재신청이거나, 시설대출의 경우 종전과 같이 해소 후 신청 가능
- ※ 단, 신청시점 기준 공단대출 30일 초과 연체, 신용정보 등재, 세금체납 사실이 없고 휴·폐업 상태가 아닐 것

□ 지원내용

-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,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
 - (상환기간 연장)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잔여 상환기간 + 최대 5년(60회)
 - (적용금리) 이용 중인 상품의 가중평균 약정금리+ 0.2%p
다만 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+ 0.4%p 적용

※ 다건대출 이용 중인 경우,

- 통합계좌로 운영하되,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하고 신청 가능
 - * 상환연장시 제외한 대출은 기존 일정대로 상환 필요(추가 상환연장 불가)
 - ** 약정 전 단계의 경우에만 취소 후 거치 제외하여 재신청 가능(약정 후 취소 불가)
- (기간연장) 이용 중인 공단 직접대출 평균 잔여 상환기간 + 최대 5년(60회)
- (적용금리) 고정금리, 변동금리 구분하여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,
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 평균금리 + 0.2%p (연체계좌의 경우 0.4%p) 적용

- (제한사항) 심사 결과 부결판정, 또는 심사완료 후 약정직전 채무자 취소 요청시, 판정일 또는 취소일 부터 3개월간 재신청 불가

□ 지원절차

(1) 신청접수 (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)

－ (비대면 접수)
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(<https://ols.semas.or.kr>) 접속 및 로그인 후
[대출관리 - 정책자금상환연장]을 선택하여 신청

－ (현장·대면 접수) 지역 센터 방문하여 신청(디지털 취약자)

(2) 접수 확인 및 심사

－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

－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/ 경영애로 유무/ 상환가능성에 대해 정량·정성적 심사

－ 필요한 경우(잔액 5천만원이상 업체, 공단채권 연체보유업체 등) **현장실사** 후 심사 의견서 작성

－ **단기 연체자로 신청시 현장실사 필수**

※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,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**1개월 이상**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3) 승인, 약정

－ 지원 승인 후 약정체결, 실행

※ 약정 전까지,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는 약정직전 수납 필요,

단, 단기연체자 신청의 경우, 연체료와 미납원금,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금액에 산입

□ 주의사항

- 본 제도는 **신청만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** 상환계획서에 의거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 결과, 평가된 업체에 대하여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**‘상환유예’ 제도가 아닙니다.**
- 공단 연체계좌 보유 상태에서 제도 신청시 **연체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습니다.** 심사~약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연체료 가산, 신용정보 등록관리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**신중한 판단 후 신청하여 주십시오.**
- **단기연체 신청의 경우,**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시 발생한 **연체료와 미납원금,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금액에 산입**됩니다.
- 정책자금 상환연장 시, **이용금리+0.2%p (단기연체 신청의 경우 0.4%p)**가 적용되어 현재 대출상품 금리보다 **금리 상승**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제도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시 **전자약정서가 연락처로 전송**됩니다.
다만, **단기연체신청의 경우,** 해당 전자약정서 작성은 **전송당일 오후 5시 까지 유효**하며, 유효시간 내 **작성 불가할 경우 해당 약정서는 자동 폐기**되고, 다음 영업일에 **새로운 약정서를 전송**받아 유효시간 내 작성하셔야 합니다
-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시, 약정일 익월부터 **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**이 진행됩니다. 이점 유의하시어 다전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시 **점을 조율**하시거나 **제외 후 신청**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,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스케줄 대비 **증가**하게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본 제도는 최초 지원결정 후 해당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**중복 지원이 불가능**합니다